

#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■ 공급위치 : 경기도 화성시 625번지 외 신동탄파크자이

■ 공급규모 및 내역 : 총 982세대

[아파트 지하 1~3층, 지상 11~21층, 총 11개동, 98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]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: 10% 이내)

● 신청자격

- 대상자 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(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중소기업근로자 등)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원)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

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. 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)

- ① 청약예금 :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
-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㎡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
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정해진 날짜(신규일응당일)에 월납입금(또는 예치금)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(단,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)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다자녀 / 노부모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(특별공급은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제1항 제3호, 제4호,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- 대상세대

(단위: ㎡/ 세대)

구 분(전용면적)	76	84	계
세대수	39	40	79

※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,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● 당첨자 선정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.

[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불가]